

中共 特許法施行 움직임

—技術開發促進劑로 不可避—

全人大會 5次會議서 報告

中共은 現在 外國으로부터 先進技術을 積極的으로 導入해서 國內科學技術水準의 向上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全面的 發展을 꾀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中共은 特許法을 制定해서 特許制度를 確立하기로 政策을 결정하였다(1982年 11月 30日 全人大會 第5次會議에서의 趙紫陽主席의 報告).

中共에서는 지난 數年間に 科學技術進步의 原動力이 되는 發明과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先進技術은 아무래도 法律에 의해 強力하게 保護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發明促進과 外國으로부터의 先進技術導入이 어떻게 하면 順調롭고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問題는 中共의 法律이 이들을 어느만큼 保護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判斷하기에 이르렀다.

1982年 12月 全人大會 第5次會議에서 改正된 新憲法은 國家根本法의 形式을 빌어 中共에 대한 外國企業등의 投資와 經濟協力을 許可하고 이들의 合法的 權利와 利益이 中共의 法律에 의해 保護받도록 明確히 規定하고 있다(憲法 第18條). 그리고 憲法 第41條는 國家가 發明을 保護 獎勵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中共憲法中에 이러한 規定이 設定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憲法은 아무리해도 國家의 根本法으로 發明保護에 關係 詳細하게 具體的으로 規定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憲法의 規定에 根據해서 發明을 規制하고 保護할 수 있는 具體的 法律이 빨리 制定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았다.

實體的 法律이란 特許法을 비롯한 工業所有權法을 指稱하는 것이며 이들 法律이야말로 中共內의 發明者와 外國의 技術移轉者에 대해서 合法的 權利와 利益을 效果의이고 具體的으로 保護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全世界에 걸쳐 158개의 國家 또는 地域이 特許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그 중에는 先進工業國이 있고 開發途上國도 있다. 資本主義國家가 있는가 하면 社會主義國家도 있다. 그러므로 特許法은 世界 大部分의 國家에서 採用되고 있는 法律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지금까지 特許制度는 물론 特許法에 類似的한 法律조차 制定해 놓지 않았다. 그 原因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생각이 中共에서는 뿌리깊게 박혀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中共이 社會主義 共有制度를 採用하고 있는 國家이기 때문에 發明은 당연히 國家에 屬하는 것이고 發明者에게 特許權을 賦與한다는 것은 論理上 맞지 않으며 따라서 發明者의 特許權保護를 中心으로 하는 特許制度를 設定할 必要가 없다는 思考方式이 그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中共은 開發途上國의 하나로서 科學技術의 發展이 先進工業國에 비하여 훨씬 뒤져 있으며 發明開發의 水準도 매우 낮을 뿐 아니라 特許法을 制定하면 外國으로부터의 特許出願이 國內企業들의 特許出願보다 壓倒的으로 많으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自國의 科學技術發展에 相當한 不利益을 미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中共은 조만간에는 特許法을 制定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見解도 強하게 擡頭되고 있었다. 물론 요즘 이러한 思考方式에 反對하는 見解도 있었으나 그렇게 強力하지는 않았다. 그런 연유로 中共에서는 發明保護에 關係서 特許制度와는 다른 發明獎勵制度가 採用되어 왔다.

中共 國務院은 1963年 11月에 發明獎勵條例를 公布하고 1978年 12月에 改正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든 發明者에게 特許權에 願似的한 權利를 賦與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發明의 重要性和 價値에 對應해서 發明者에게 一種의 榮譽賞(發明

證書 내지 徽章)과 少額의 獎勵金을 주는 것 뿐이다.

한편 어느 企業이든 單位든 간에 發明을 自由로 無償으로 實施할 수 있다.

이러한 發明獎勵制度는 말할나위 없이 特許制度의 本質과는 다르고 蘇聯의 發明者證制度와도 다른 말하자면 一種의 表彰制度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 中共政府의 經濟發展과 科學技術의 促進에 관한 政策은 顯著하게 變하고 있으며 發明을 無體財產權으로서 強力하게 保護할 必要가 있음도 더욱더 明白하게 되었다. 그러나 前述한 發明獎勵制度는 自體 制度上的 缺陷 때문에 아무리 해도 發明을 強力하게 保護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中共에 있어서는 發明獎勵制度를 變更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으며 發明獎勵制度 代身에 特許制度를 採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主張이 有力하게 擡頭되고 있어 結局 이것이 中共政府의 方針이 되었다.

中共에서는 特許法의 制定이 外國으로부터의 先進技術導入에만 必要한 것이 아니라 國內의 發明과 新技術의 開發 내지 이들에 대한 保護에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後者の 保護를 必要로 하는 事態가 發生했다. 즉, 中共 科學研究者인 徐重 등이 完成한 重大發明 하나는 實施되면 매우 큰 經濟的 利益을 받을 것이 明白해졌다.

1981年 8월에 全國에서 온 30餘名의 專門家가 모여서 그 發明에 관한 技術評價會를 열고 높이 評價했으나 當時 中共에서는 特許法이 없었으며 더우기 사람들은 特許法에 관한 知識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技術評價會에 參加한 專門家들 및 發明者 本人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發明을 조속히 權利化해서 保護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最近 徐重은 美國에서 研修를 하고 있는 동안 그 發明을 出願코자 했으나 國內에 있는 雜誌가 그 發明에 관하여 지나치게 일찌기 詳細하게 報道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特許出願도 늦었기 때문에 發明의 新規性이 喪失되어 結局 그 發明을

特許出願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밖에도 中共에서는 類似한 事件이 적지않아 큰 損失을 입은 事例들이 또 있다.

外國으로부터의 先進技術의 導入에 관해서 特許法의 保護가 不可缺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前述한 바와 같이 特許法은 世界 大部分의 國家에서 採用하고 있는 特律이며 國際的 技術移轉은 주로 特許實施權의 라이선스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다. 中共에서는 技術導入에 있어서 特許技術導入이 차지하는 比率이 상당히 높다.

中共의 어느 學者가 機械, 化學工業關係의 10個項目에 대해 技術導入契約을 調査한 바에 따르면 플랜트設備의 導入과 單項技術導入의 그 어느쪽이든 特許技術의 導入이 반드시 包含되어 있으며 特許使用料도 支拂되었음이 明白해졌다.

그러므로 中共은 技術導入에 있어서 外國特許權자가 保有하는 特許權을 어떻게 保護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看過해 버릴 수 없게 되었다.

外國特許權자에게 있어서 中共에 技術移轉을 할 때에 가장 關心이 가는 것은 역시 中共의 法律이 自身の 特許權을 어떻게 保護해 주는가 하는 問題일 것이다.

中共은 아직 特許法을 制定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中共에 移轉하는 特許技術이 第三者의 橫斷無斷使用등에 의해 侵害될 可能性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해서 結局 外國 特許權者는 自身이 갖고 있는 先端技術을 中共에 移轉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또 移轉하더라도 中共에서는 特許法상의 保護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을지도 모를 損失을 미리 技術移轉料에 附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령 동일한 特許技術이라도 中共에 移轉하는 경우에는 特許制度를 設定하고 있는 國家에 移轉하는 경우와 比較하여 支拂해야 할 特許使用料가 대단히 높은 것도 事實이다.

中共政府에 있어서 이러한 事實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이것은 中共으로의 技術導入에 큰 障害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狀況을 바꾸기 위해서는 特許法을 制定해서 特許制度를 確立할 수 밖에 없다고 생

각된다.

다행히 中共에서는 特許法을 制定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顯著해졌다.

1979년에 採擇된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은 外國側合者經營者가 自身이 保有하고 있는 特許技術 등을 出資하는 것을 許可하고 있다.

그 以後 採擇된 「外國企業所得稅法」 및 「個人所得稅法」은 特許使用料에 課稅하는 것도 規定하고 있다.

더우기 中共이 美國 등 西方先進國家들과 締結한 貿易協定 또는 技術協力協定中에도 相互 特許權을 保護하는 規定이 包含되어 있다.

最近 中共政府의 한 指導者는 前記의 「徐重事件」에 言及해서 「中共의 特許法을 될 수 있는 한 早速히 制定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소홀히 하면 不利益을 받는다」고 指摘했다(1983年 1月 15日 光明日報 第1面).

同一뉴스에 의하면 中共國務院은 中共에 있어서의 特許制度設定을 決意해서 特許法草案作成을 이미 完了하고 今年 中共 全人大會常務委員會의 審議에 회부할 豫定이라고 報道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審議에 걸려 있는 「中共特許法」(中共에서는 特許法을 專利法이라 한다)이 어떠한 規定을 設定할 것인가 혹은 어떠한 內容인가는 아직 公表되어 있지 않다.

今年은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協約이 發效한지 100年이 되는데 中共은 1980年에 WIPO(世界知的所有權機構) 設立協約을 批准했으며 더우기 1982年 8月 20日에는 AIPPI 中共部會가 北京에서 發足해서 1983年 5月 23日에 파리에서 열렸던 AIPPI 第32次總會에서 AIPPI의 正式會員이 되었다. 이밖에 올해 안으로 파리協約批准을 準備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特許管理)

7月の 메모

◁本會主要實行業務▷

- | | | |
|---------------------|---------------------|--------------------|
| 1日 ◇特許公報 第826號 發刊 | ◇公開特許公報 第27號 發刊 | ◇第415回 이 週의 優秀發明 |
| 2日 ◇實用新案公報 第605號發刊 | 14日 ◇特許公報 第829號 發刊 | 「豆乳와 계란을 주재료 한 |
| ◇商標公報 第234號 發刊 | 15日 ◇意匠公報 第360號 發刊 | 營養飲料 製造法」選定 報 |
| ◇第412回 이 週의 優秀發明 | ◇工業所有權登錄目錄(5月 | 道依賴 |
| 「가스레인지의 가스 供給 | 分) 發刊 | 25日 ◇特許公報 第832號 發刊 |
| 調節裝置」選定 報道依賴 | ◇第414回 이 週의 優秀發明 | ◇工業所有權登錄目錄(6月 |
| 6日 ◇特許公報 第827號 發刊 | 「酸化칼슘 製造法」選定 報 | 分) 發刊 |
| ◇公開特許公報 第25號 發刊 | 道依賴 | ◇會誌「發明特許」7月號 發 |
| 7日 ◇實用新案公報 第606號發刊 | 18日 ◇實用新案公報 第608號發刊 | 刊 |
| 8日 ◇大法院判例(6月分) 發刊 | ◇意匠公報 第361號 發刊 | 26日 ◇第2回 全國優秀發明品展示 |
| 9日 ◇特許公報 第828號 發刊 | ◇會員企業社內研修講座後援 | 會 出品物 選定 審査會議 |
| ◇公開特許公報 第26號 發刊 | (株式會社 農心) | 27日 ◇特許公報 第833號 發刊 |
| ◇第413回 이 週의 優秀發明 | 19日 ◇特許公報 第830號 發刊 | ◇實用新案公報 第727號發刊 |
| 「가스용 安全裝置」選定 | 20日 ◇商標公報 第235號 發刊 | 28日 ◇意匠公報 第363號 發刊 |
| 報道依賴 | ◇公開特許公報 第29號 發刊 | 29日 ◇特許公報 第834號 發刊 |
| 11日 ◇意匠公報 第358號 發刊 | 21日 ◇特許公報 第831號 發刊 | 30日 ◇特許公報 第835號 發刊 |
| 13日 ◇實用新案公報 第607號發刊 | ◇意匠公報 第362號 發刊 | ◇海外特許情報 第80輯 發刊 |
| ◇意匠公報 第359號 發刊 | 23日 ◇公開特許公報 第30號 發刊 | |